

해외의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적으로 27개국 정도가 있다. 미국은 1963년 목공나사로 인한 인사 사고에서 재판부가 제조업체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이후 각종 판례로 정착되었으며, 일본, EU 국가, 중국 등은 성문법화하여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 미국 및 중국 등의 제조물 책임법 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 제도

일본은 1995년도부터 제조물 책임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당시 EC 지침을 참고로 하여 성문법화 했다. 법 시행 직후 제품사고로 인한 고충 상담이 법 시행 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해 사회적인 관심도가 증폭됐으나 정부차원의 지원활동과 기업 스스로 제품에 대한 안전도 및 품질 향상 노력으로 현재는 법 시행 전의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있다.

제품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에 대해서는 정부 및 민간 기구의 분쟁 사전 조정 노력과 기본적으로 재판을 기피하는 국민성으로 인해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소송 판결 사건은 24건으로 그다지 많지 않으며, 손해배상액은 8억 5,932만 엔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 및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을 보면, 기업 측면에서는 설계, 제조 단계의 안전성 확보에 충실, 경고 표시의 철저, 제품 취급 설명서의 충실화가 도모되어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 등 해외 진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제품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 계몽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의식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가. 제조물 책임제도 운용 체계

제조물 책임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내각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국민생활센터(소비자보호원의 기능) 및 각 도부현에 설치된 소비자생활센터와 중소기업진흥공사 산하 중소기업지역정보센터에서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고충 상담을 수렴해 분쟁의 사전 조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간의 조직으로는 업종별 협회 산하에 11개 제조물 책임센터가 설치되어 상담 및 분쟁의 사전 조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제품 사고로 인한 원인 규명은 분쟁 조정 기구별로 국공립 시험 연구소 등 관련 연구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나. 일본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 대응

법 시행 초기에 전개한 일본의 중소기업 대응 노력을 보면, 첫째로 중소기업총합사업단의 정보 제공 사업에 참가해 중소기업 안전대책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여 제품 안전 대책 등에 관한 노력과 하청기업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청사업자와 모기업 간의 계약에 대해 제품 사고에 따른 책임 분담 사항 등 법무 상담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제품 안전성 향상 자금을 활용해 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조 기계, 검사 기구의 도입과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제조물 책임에 대응하였으며,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품 사고를 최소화하였다.

2.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제도

가. 법제도 연혁과 시행내용

미국의 제조물 책임제도는 1963년도의 그린맨 사건 판결 이후 제조물 책임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시발로 판례법상의 일반적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제조물 책임법은 전통적으로 주정부별로 독립된 판례에 의해 형성·발전되어 왔으며, 연혁적으로는 과실책임, 보증책임, 엄격책임(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로 발달했다. 1970년에 들어서 제조물 책임위기와 1980년대의 제조물 책임보험위기가 미국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종래의 엄격 책임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연방차원에서의 제조물 책임법 개혁과 더불어 각 주정부에서도 법 개정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997년 12월에 제조물 책임에 관한 제3차 불법행위 법 리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 Liability)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으로는 ① 판매시 제품결함에 입각한 상업적 제품 판매자의 책임 ② 판매시의 제품결함에 의거하지 않는 상업적 제품판매자의 책임 ③ 승계자 및 외관상 제조자의 책임 ④ 인과관계 및 적극적 항변을 규정한 일반적 적용규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나. 소송 및 배상현황

소송을 선호하는 국민성과 저렴한 제소비용, 소송비용의 당사자 부담주의 등으로 인해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보험회사가 제조물의 안전성 기준이나 규격을 준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을 인수하고 ㄱ 사고 원인 규명 및 피해배상을 해결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3. 중국의 제조물 책임법제도

중국의 제조물 책임제도는 1993년 제정된 제조물 품질법에서 규정되었다. 또한 독일,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대륙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공법적 성격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제조물 책임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도 향상은 물론, 국가 기준 및 업계 기준 등에도 부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의 제조물 책임 법리를 보면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자에 대한 엄격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면책사유로는 ①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②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켰을 때,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아직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③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4. EU의 제조물 책임법제도

EU에서는 유럽시장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EU 지역 내의 경쟁조건 통일화, 유통의 촉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제조물 책임에 관한 통일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8년 제조물 책임의 통일입법을 위한 검토를 시작한 이래 약 15년간의 논의를 거쳐 1985년 제조물결함의 배상 책임에 관한 EU 지침이 제정된 이후 EU가 맹국과 EFTA 국가 모두가 ㄱ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가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ㄱ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 